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#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## 제 10-3 민 사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8나72033 부당이득금 |
| 원고, 항소인 | 1. A |
| | 2. B |
| |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시 |
| | 소송대리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 |
| 제 1 심 판 결 |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7. 선고 2018가소1812251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19. 5. 7. |
| 판 결 선 고 | 2019. 6. 4. |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17,100,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4. 6. 10. [redacted]구청장에게 [redacted]구 C 등 지상의 다세대주택 D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2012. 1. 2.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취득세 14,490,000원 및 지방교육세 1,349,000원을 신고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신고행위'라고 한다).

나. 위 세금에 대한 관리를 이관받은 피고는 2015. 3. 11. 원고에게 체납세액을 고지하며 납부를 촉구하였고, 원고들은 2015. 3. 19.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17,100,970원을 납부하였다.

다. 한편 원고들은 E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021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원고들이 E 등과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 이에 원고들이 위 법원 2016나301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16다27304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어, 2017. 3. 31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(이하 '관련소송'이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원고들은,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, 관련소송의 쟁점 및 판단이 간명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였으며, 설령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 법적 안정성보다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,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, 그 납부행위는 신고로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.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).

다.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련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. 지금에 와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그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이나 취득세 납부행위를 다툴 만한 법적 구제수단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사정,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·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, ② 원고들이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목적이 아니라 관련소송에 도움이 되고자 자진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, 이를 심리한 관련소송도 소제기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점, ④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 또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약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 사건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.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. 결국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재판장 판사 정 원

판사 김유성

판사 최은주